

2025110225

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
1. : ()

[: ()]

2. : 136
()2

3. : 2025 01 16

: 1992 8 16 (3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
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
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


2025 2 7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



